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 25명, 경장 23명, 6급 1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세종경찰서를 세종북부경찰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257개”를 “258개”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27명”을 “528명”으로 한다.

별표 2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세종경찰서”를 “세종남부경찰서, 세종북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0,438”을 “130,53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6,669”를 “126,75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6,573”을 “126,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47”을 “3,753”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3,712”를 “3,718”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경찰서) ①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u>257개</u>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42조(경찰서) ① ----- ----- ----- <u>25</u> <u>8개</u>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u>527명</u> 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u>528명</u>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130,438</u>	<u>130,531</u>	+93
경찰공무원 계	<u>126,669</u>	<u>126,756</u>	+87
·	·	·	
·	·	·	
총경 이하	<u>126,573</u>	<u>126,660</u>	+87
·	·	·	
·	·	·	
일반직 계	<u>3,747</u>	<u>3,753</u>	+6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3,712</u>	<u>3,718</u>	+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2